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17호 2021. 5. 4(화)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657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 남원시 조례 제1658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남원시 조례 제1659호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원발의) ----- 23
- 남원시 조례 제1660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 남원시 조례 제1661호 남원시 노인목욕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28
- 남원시 조례 제1662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 남원시 조례 제1663호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43
- 남원시 조례 제1664호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47
- 남원시 조례 제1665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50
- 남원시 조례 제1666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2
- 남원시 조례 제1667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2
- 남원시 조례 제1668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 남원시 조례 제1669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88
- 남원시 조례 제1670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91
- 남원시 조례 제1671호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 94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419호 남원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 ----- 9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57 호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으로,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2호 중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남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남원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p> <p>2. (생략)</p> <p>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생략)</p> <p>2.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구성) ① ----- ----- ----- <u>7명</u> ----- ----- -----.</p> <p>1. <u>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u> ----- -----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3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② ----- <u>5명</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 -----</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58 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공동체 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함
2.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함

- 3.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
- 4. 시민, 지역의 성별·연령별·계층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
- 5.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킴
- 6.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7. 환경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함
-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함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호 중 “지역공동체 활성화를”을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로 하고, 제4호를 제9호로 하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

5.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사업
6.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7.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8. 시민의 주거 및 복지 증진사업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동체 활동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의결한다.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의 제목“(지원 대상 및 방법)”을“(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지역공동체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마을활동지원가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지원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활동지원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을활동지원가의 양성·배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원봉사 및 홍보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활동가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홍보 관련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2. 지역공동체 설문조사 참여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6조제1항 중 “정책 및 사업”을 “활성화 정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를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지역공동체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민소통 업무담당이”를 “지역공동체업무 담당이”로, “시민소통 업무담당자”를 “지역공동체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9조 중 “위원회에”를 “심사위원회 및 위원회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중 “지역공동체”를 “공동체”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이용료 등)”을 “(시설 사용허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일 다음날까지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감염병 예방 등의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기관·단체명)		전 화 번 호	
	주 소			
행사(활동) 명				
사용시설물	1층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 2층 회의실(1) <input type="checkbox"/> , 2층 회의실(2) <input type="checkbox"/>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변경시	당 초			
	변경사항			
사 용 인 원				
비 고				

위와 같이 「남원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신청인	성명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행사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사용허가 조건

1. 「남원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침(시설관리자의 지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4. 허가 통지서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 후 반드시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하며, 사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 봉투에 담아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붙여 「남원시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u>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성장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자치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남원시 <u>지역공동체 지원센터</u>”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공간, 시민들과 지역공동체간 소통과 공유·협력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공동체 지원센터</u>----- ----- ----- ----- -----.</p>
<p>제3조(기본원칙) 시민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p>	<p>제3조(기본원칙) ----- ----- ----- -----</p>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자치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2. 시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함.

3. 시민과 시장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

4.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시민참여) (생략)

② (생략)

<신 설>

-----.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함

2.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함

3.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

4. 시민, 지역의 성별·연령별·계층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

5.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킴

6.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7. 환경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함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함

제4조(시민참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9조(지원범위) -----

-----.

1.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

2.·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4. (생략)

<신설>

--

2.·3. (현행과 같음)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

5.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사업

6.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7.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8. 시민의 주거 및 복지 증진사업

9. (현행 제4호와 같음)

제9조의2(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동체 활동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의결한다.

-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 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 4. 그 밖에 시의 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지역공동체활동을 추진하려는 지역공동체조직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

제9조(사업공모) ① 시장은 읍·

면·동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
되, 필요할 경우 사업 주체를 지
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
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읍·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
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신청 및 지원 절차 등) ①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삭 제>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지역공동

체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
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 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 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 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지역공동체조직은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 다수의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④ 지역공동체조직이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마을활동지원가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지원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활동지원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을활동지원가의 양성·배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원봉사 및 홍보활동 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홍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및 누리소통망서비스(SNS) 활동가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신 설>

제11조 (생략)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략)
-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심사 선정
- 3. 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 6. (생략)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지역공동체 홍보 관련 이벤트 응모자 및 당첨자
- 2. 지역공동체 설문조사 참여자
-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의3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6조(설치 및 기능) ① -----
----- 활성화 정책 등 -----

-----.

② -----
-----.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3.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 4. ~ 6.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
 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 4.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
 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소통 업무담당이 되
 고 서기는 시민소통 업무담당자
 가 된다.

⑤·⑥ (생략)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
 문가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위
 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
 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4장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시장은 제1조의 목
 적 달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
 하여 남원시 지역공동체 지원센
 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지역공동체업무 담당부서의 장

1. ~ 4. (현행과 같음)

④ -----

 ----- 지역공동체업무 담당이 -
 ----- 지역공동체업무 담당
자-----.

⑤·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수당 등) 심사위원회 및
위원회에 -----

제4장 남원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설치) -----

 ----- 공동체 -----

·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이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시설 및 설비 이용료 등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

-----.

제27조(시설 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신청 접수일 다음날까지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을 해칠 것으로 판단되거나 감염병 예방 등의 공익적 필요가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

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59 호

남원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제공
-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회복지 분야
2. 행정 및 법률 분야
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
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5. 토목, 건축,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
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사업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0 호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이수자 등”을 “이수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 중에서”로, “단장이”를 “단장이 자격심사를 통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 ③ (생략)</p> <p>④ 비상임 전문단원은 각 대학 농악관련학과의 우수한 재학생이나 졸업생, 농악무형문화재 이수자 등 부단장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위촉한다.</p> <p>⑤ (생략)</p>	<p>제6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이수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일반단원 중에서 ----- -- 단장이 자격심사를 통해 -- -----.</p> <p>⑤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1 호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를 “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목욕권”을 “목욕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목욕권(이하 “목욕권”이라 한다)”을 “목욕비”로, “이상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이 설치된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3.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제3조의 제목 “(지원기준 등)”을 “(지원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욕권 지급기준”을 “목욕비 지원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등 지원 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분기의 다음 분기”를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7월부터 9월 까지의 기간에는 1매만 지급한다.

3. 목욕비 지원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지원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으로 한다.

-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 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욕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에게 목욕권을 교부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목욕권 사용)”을 “(목욕권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소에 본인”을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목욕권을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 ④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6조 중 “목욕장업주와(이하 “사업주”라 한다)와”를 “목욕장업소 등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목욕요금의 청구 등)”을 “(목욕요금의 청구 및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을”을 “목욕장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로, “지급청구서와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붙여”를 “지급청구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사업주 계좌번호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목욕장업소별로 정산한 이용요금을 청구된 계좌에 입금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사업주에게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수”를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해야하며, 해당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읍면동장”을 “읍·면·동장”으로, “따른목욕권”을 “따른 목욕권”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목욕비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p>「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남원시장 귀하</p>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p>1. 남원시 관내 거주자 : 여·부</p> <p>2. 만 70세 이상 여부 : 여·부</p> <p>3.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여·부</p> <p>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 지원 : 여·부</p> <p>※ 해당사항에 체크</p>			
확인자 직위 :		성명 : 읍면동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뒷면]

목욕비 지원 신청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 목욕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주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관내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만70세 이상 여부 확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및 변동사항 확인 등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신·신청 제외자 구분 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와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목욕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이용요금 지급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업소명				대표자	
사업명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				
청구금액	금	원(금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사업기간	20 . . . ~ 20 . . .				
<p>「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p> <p>남 원 시 장 귀하</p>					
<p>※ 붙임서류</p> <p>1. 사용한 목욕권</p> <p>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p> <p>3. 통장사본</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u>목욕권</u>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u>목욕권</u>(이하 “<u>목욕권</u>”이라 한다) 지원대상자 (이하 “<u>지원대상자</u>”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u>시</u>”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u>이상</u> 「<u>기초연금법</u>」에 따른 <u>기초연금</u> 수급자로 한다.</p> <p>② 「<u>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u>」에 따라 운영 중인 작은 목욕탕 지역 노인은 제외한다.</p>	<p><u>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 ----- ----- ---- <u>목욕비</u> ----- -----.</p> <p>제2조(지원대상자) ① ---- <u>목욕비</u> ----- ----- ----- ----- ----- <u>이상</u> <u>의 노인</u>----- -----.</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남원시장</u>(이하 “<u>시장</u>”이라 한다)이 「<u>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u>」에 따라 운영하는 <u>작은 목욕탕</u>이 설치된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u>노인</u></p> <p>2. 「<u>노인장기요양보험법</u>」에</p>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 목욕권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 지원 기준에 최초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2. 목욕권은 1명 분기별 3매, 1매당 4,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름철 비수기인 3/4 분기에는 1매만 지원한다.
3.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목욕권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

다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3.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노인

<삭 제>

제3조(지원기준) 목욕비 지원기준

- .
1. -----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 달-----.
 2.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한 명당 매월 1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는 1매만 지급한다.
 3. 목욕비 지원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납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면 시장은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록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분기 첫 달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목록권을 교부한다.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통장 등을 통하여 목록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목록권 사용) ① 목록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록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이용요금은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목록권의 사용기한은 목록권 뒷면에 별도 표시한 기한까지로 한다.

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목록권을 읍·면·동장에게 배부하고, 읍·면·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에게 목록권을 교부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

-----.

제5조(목록권 사용 등) ① 시장은 목록권을 종이형 또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카드형의 제작 및 세부적인 운영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목록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목록장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록권에

③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권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목욕장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주와(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필요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등) ① 사업주는 목욕권 이용요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목욕권 및 통장사본을 붙여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붙임 서류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사업주 계좌번호로 이용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7조에 따른 이용요금을 환수할 수 있다.

별도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③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
-----.

④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제6조(협약체결) -----
----- 목욕장업소 등과 -----
-----.

제7조(목욕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 지급청구서를

-----.

② ----- 따른 -----
----- 목욕장업소별로 정산한 이용요금을 청구된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
-----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해야하며, 해당 목욕장업소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

1.·2. (생략)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읍면
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
식에 따른목욕권 수불대장과 별
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목욕권 교
부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
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관리 등) ----- 읍·
면·동장-----
--- 따른 목욕권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2 호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 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확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23·24·25·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2. 서남대학교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에 따른 감면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9조의2(서남대 폐쇄로 인한 침체지역에 대한 감면) 서남대학교의 폐쇄로 인하여 그 주변생활권 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대상을 확정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u>1.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향교동 20, 22·23·24·25·26 및 29통 내 토지(건축물과 다가구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함)와 건축물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u></p> <p><u>2. 서남대학교 폐쇄 직전년도 대비 공시가격이 100분의 5 이상 하락하였거나 남원시 평균 변동률 대비 100분의 8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3 호

남원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립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2. “입주기업”이란 남원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

는 것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
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 ① 입주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별도계정) 관리수탁자는 받은 이용료와 지원받은 경비의 투명하고 합리

적인 관리를 위해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기업활동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
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
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

항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4 호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5 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읍면동장”을 각각 “시의원 및 읍·면·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현황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읍면동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공사시행 통보) ----- ----- ----- ----- <u>시의원 및 읍·면·동장</u> -----, ---<u>시의원 및 읍·</u> <u>면·동장</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6 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을 운영하며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

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단원을 위촉한다.

제3조(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시장은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②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월 한차례 이상 제2항에 따른 총괄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시장은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읍·면·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에 관하여 심의·조정된 사항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이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2조(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6.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7.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6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

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8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및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재단 등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임명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및 읍·면·동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등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각각 단장 등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5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임명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호 : _____

성명	○○○ (성별)	연령		혈액형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격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

번호 : _____

단체명			대표자	○○○ (휴대전화)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p>[특이사항]</p> <p>([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p>				

상기 본 단체는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붙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 ○ ○ ○ (서명 또는 인)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별지 제5호서식]

활 동 확 인 서(예시)

성 명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읍·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6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횟 수	시 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록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4호서식]의 연
번을 붙여서 기록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 가능

※ 남원시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출 입 증

출 입 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200px; height: 150px; margin: 0 auto;"></div> <p>사 진 (3×4cm)</p>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 5.5cm →

지역자율방재단원증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div>	7. 7 cm ↓
바탕 배경에 시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9호서식]

요양 [], 장애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의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 (은행 , 계좌번호 :)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확인으로 대체함) ⑧ 보상금 지급관련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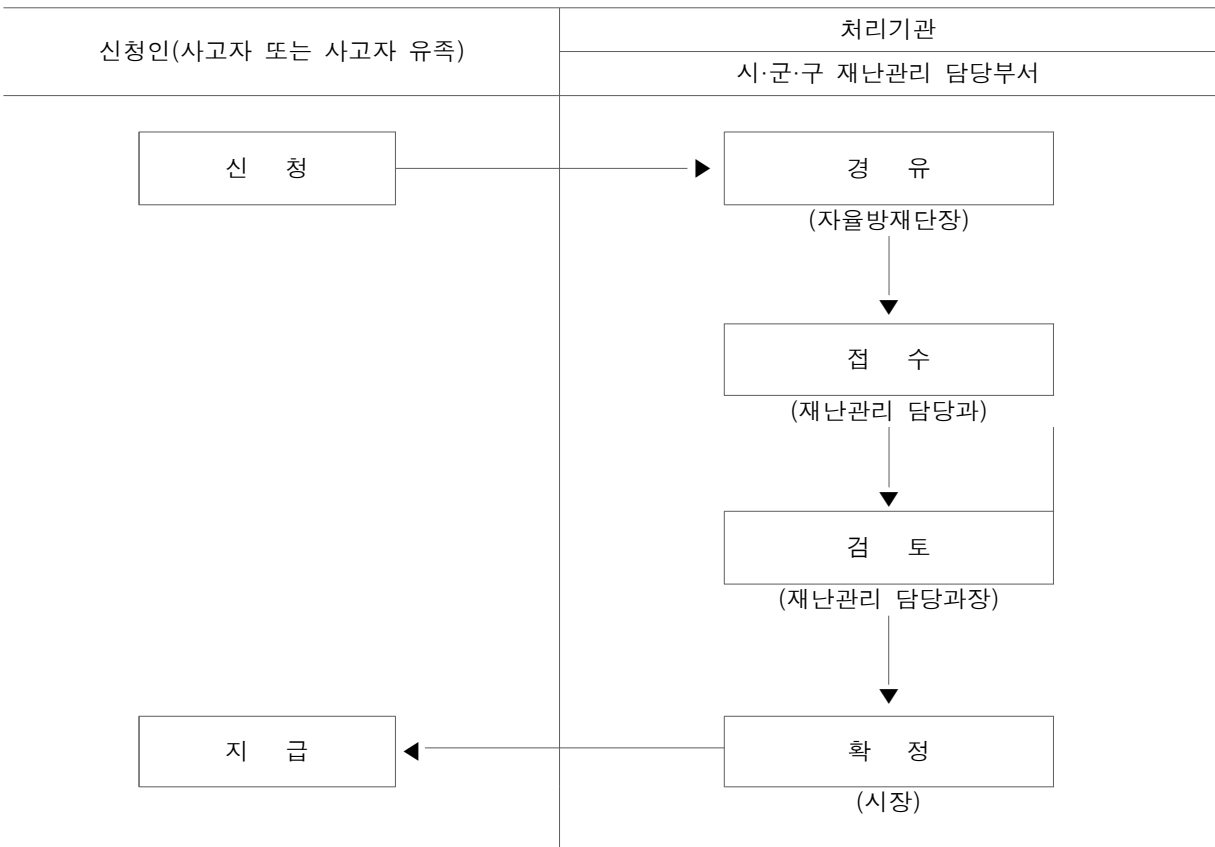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7 호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2.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7.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이 설치한”으로, “민간위탁”을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 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을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제8조를 준용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의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의 이용하기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p>

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조항 신설 2018.1.24>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4항에서 이동, 2018.1.24>

5. 삭 제

6. “공공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에 우선 적용된다.

에 따른 자연공원>개정 2018.

1. 24>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 제7호 · 제10호에 따른 관광
지 ·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3호 · 제5호 · 제7호 · 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임시시장 ·
상점가 · 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
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
설 중 역시설

8.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
선장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
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9조에서 이동, 2018. 1. 24>

12.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시설 <12호에서 이동, 2018. 1. 24>

14.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13호에서 이동, 2018. 1. 24>

<신 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 공간을 3밀리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2.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3.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4.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음향시설·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공중 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

6.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7.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설치한 -----

-----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

② ----- 따라 -----

-----.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

략)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중 -----

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편의위생용품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
-----.

② ~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8 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를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효율적 시행에 따른”을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에”를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분”을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주민 대표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8. 사회복지 담당국장

제7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 <u>설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u> <u>설치·운영 조례</u></p>	<p><u>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 <u>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남원시 <u>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 및 <u>건강생활실천협의회</u>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6조</u>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3조</u>----- ----- <u>지역보건</u> <u>의료심의위원회</u>----- ----- ----- -----</p>
<p>제2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 및 <u>건강생활실천협의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전문개정 2017.10.13.]</p>	<p>제2조(설치) ----- ----- <u>지역보건의료</u> <u>계획의 수립</u> ----- ----- ----- <u>지역보건</u> <u>의료심의위원회</u>----- ----- -----</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하기 위하여 <u>시장의 자문</u>에 응한다.</p> <p>1. ~ 2. (생략)</p>	<p>제3조(기능) ----- ----- <u>심의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p>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 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대표

2.·3. (생략)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 7. 삭제

<신설>

제7조(회의) ① (생략)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생략)

3. -----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

4. (현행과 같음)

5. -----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

1. 지역주민 대표

2.·3. (현행과 같음)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8. 사회복지 담당국장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이상 -----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69 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
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상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남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건교육 관련 사업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양개선과 관련된 사업
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4.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활성화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70 호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로타바이러스 : 2회 또는 3회
- 2. 대상포진 : 1회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1. 로타바이러스 : 생후 8개월 미만 영아
- 2. 대상포진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으로 한다.(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비용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접종방법 등) ① 선택적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② 선택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접종한 사람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① 시장은 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 업무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시 보건소에 비용상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 보건소에서는 피접종자에 대하여 비용지급심사를 거쳐 상환결정을 한 후 비용을 상환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등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조례 제 1671 호

남원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남원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남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기간, 참여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4조(홍보)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참가신청 등) 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장소 및 자료의 제공
2. 시의회 견학 및 방청
3. 교통편의 제공
4.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5. 그밖에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 신청서

학 교 명						
담당교사	성 명				E - Mail	@
	전화번호	(사무실)		(핸드폰)		
참가희망일	시 간	학 년	반	참가인원	비 고	
①						
②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이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교(단체)장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남원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1년 5월 3일

남원시 훈령 제 417 호

남원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평가 횟수) 종합실적 평가는 매년 11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제1호 중 “세수실적은 60점을 만점으로 하고,”를 “세수실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세정운영은 40점을 만점으로 하고,”를 “세정운영은”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평가 횟수) 종합실적 평가는 매년 12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회 실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p>	<p>제2조(평가 횟수) 종합실적 평가는 매년 11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p>
<p>제4조(평가 기준) 평가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읍·면부 및 동부별로 세수실적·세정운영 등을 항목별로 평가하되, 총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p> <p>1. <u>세수실적은 60점을 만점으로 하고</u>, 해당연도 과징실적과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평가한다.</p> <p>2. <u>세정운영은 40점을 만점으로 하고</u>, 기관장의 관심도·세정운용실적 등을 평가한다.</p> <p>3. (생략)</p>	<p>제4조(평가 기준) ----- ----- ----- ----- -----.</p> <p>1. <u>세수실적은</u> ----- ----- ----- -----.</p> <p>2. <u>세정운영은</u> ----- ----- -----.</p> <p>3. (현행과 같음)</p>